

우리나라 해상경계 획정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limitation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in Korea

최윤수* 김재명** 김현수*** 박병문****
Yun Soo Choi Jae Myeong Kim Hyun Soo Kim Byung Moon Park

요약 최근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할해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증가로 인하여 관할해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해상경계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부재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들 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서 해상경계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상경계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 고시된 『해상경계 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업무규정』을 조사·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해상경계 획정의 개념을 수립하였고 둘째,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 해상경계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 합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해상경계조정위원회 설치, 구성, 직무, 조정결과의 효력 등과 같은 해상경계 분쟁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해상경계, 관할해역, 등거리 설정선, 중간선

Abstract Recentl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promoting the rapid development of marine for delineating jurisdictional sea area. The importance of a maritime boundary has being emphasized, as jurisdictional sea area disputes among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ncreasing. The absence of the delineating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has become a source of contention between neighborhood local governments. So the delineating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in Korea will b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cientific delimitation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by analyzing A hydrographic survey guideline for confirmation of maritime bound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defined the concept of the delimitation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Secondly, we set the boundary, factors and processes of the delineating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through classifying them in detail. Lastly, we suggested the makeup of a conflict adjustment committee for preventing jurisdictional sea area disputes among local governments.

Keywords : Maritime Boundary, Jurisdictional Zone, Delimitation Standard, Local Government

1. 서론

최근 해양의 이용가치 상승과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매립지 관할권, 골재, 해저석유 등의 해저자원 및 어족자원,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각종 이해관계가 파생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해양구역 및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며,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해상경계에 대한 분쟁발생 시 객관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choiys@uos.ac.kr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박사 kimjaemyeong@uos.ac.kr(교신저자)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hsoo@inha.ac.kr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박사수료 bmpark@korea.kr

정남균(2002)은 충청남도근역 아산만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구역경계 설정방안 연구에서 해상구역경계 해결을 위한 협위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김성은(2006)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해상경계분쟁에 관한 연구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1, 2, 6]

상기 두 연구 외 국내 해상경계 관련 연구는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의 법적·제도적 방향과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해상경계 확정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경계 관련 국내의 분쟁사례조사를 통하여 분쟁유형 분석과 기존의 해상경계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상경계 확정기준 및 분쟁조정 절차를 제시하여 해상경계 확정 분쟁의 감소를 유도하고,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국내 해상경계 관련현황

2.1 국내 해상경계 관련법제도 현황

현재 국내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항만법, 지방자치법, 수산업법 등 해상경계 관련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바다를 수역, 해역, 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지자체 및 부처별 해상의 이용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에서는 공유수면을 바다·바닷가, 하천, 호수,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규정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경계에 대한 사항은 명확하지 않으며, 항만법 역시 경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행정권한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서 “종전의 구역”은 최초의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의 행정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되며, 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관할구역을 답습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에 대한 조항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해상경계 및 획정에 관련된 규정의 부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 조직 및 행정, 농림·상공업 등 상업 진흥, 지역개발 등의 각종 이권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발단이 되고 있다.

2.2 국내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분쟁사례

해상경계 및 획정에 대한 규정 및 근거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그림1과 같이 해상경계 분쟁사례는 3개 유형으로 대분류 할 수 있으며, 어업관련 해상경계 분쟁 12건, 매립지 관할권 분쟁 6건, 기타 해상경계 분쟁 6건으로 1990년대 이후로 해상경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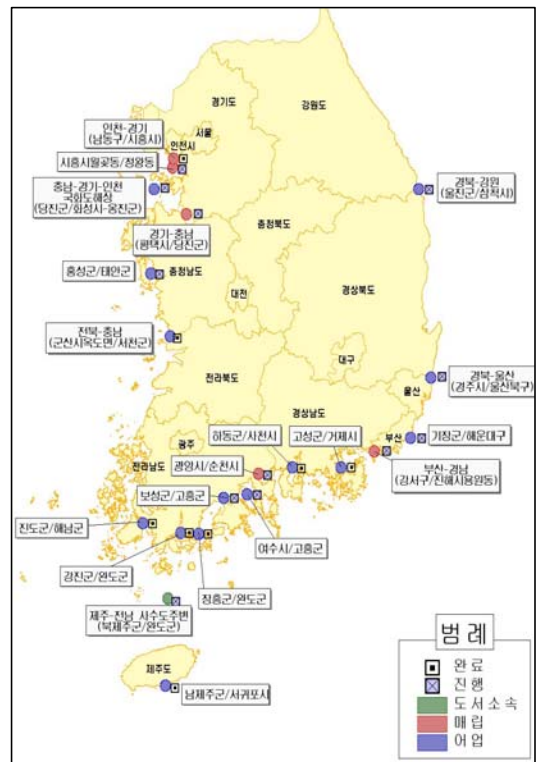


그림 1. 해상경계 관련 분쟁 현황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각 유형별 대표적인 분쟁사례로 어업과 관련한 분쟁사례로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과 전라남도 군산시간의 어업경계 분쟁 사례를 들 수 있다.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과 전라남도 군산시간의 어업경계 분쟁은 1981년 충청남도 서천군 원수동 어촌계가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어장은 구분이 곤란하므로 1개도의 허가만으로 양도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건의 이에 충청남도측에서는 공동조업수역 설정을 주장, 전라북도측에서는 공동수역 설정시 양측 해역의 수면적 차이가 15:1의 비율로 공동조업수역 설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심화되었다.

1995년 충청남도 보령어민회에서는 당시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수로국, 내무부, 수산청 등 관련 기관에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수면경계의 범위, 조업구역 위반의 법적근거”에 대한 질의에 지도상 해상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선은 해상의 도간 경계가 아니고 도서의 관할 소속을 나타내는 기호에 불과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이 경계선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성문법적 근거는 없으나 관습법상 지위를 누린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관습상 경계를 인정하고 이 분쟁은 마무리 되었다.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은 신도시, 산업단지 및 항만 등의 건설을 위하여 조성된 매립지의 귀속에 대하여 토지등록 및 이용에 따른 종합토지세, 항만세,

주민세 등 각종 세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1999년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간 항만시설 중복등록에 관한 분쟁으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78년에 간행된 1:50,000 지형도상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바다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당진군의 승소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림2, 3과 같이 1990년대 이후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상 도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하여도 서간 1cm의 기호로 표시하고 있는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상경계 표시 원칙 및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이외의 기타 해상경계 관련기호는 모두 삭제함(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44호, 지도제작도식적용규정 58260-199)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매립지 분할 및 귀속에 대한 분쟁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국내 해상경계 현황의 시사점

어업권 및 매립지 관련 분쟁 외 대표적 사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충청남도 태안군간 해사채취허가 관련 분쟁이다. 이 분쟁은 대하여 태안군의 해사채취허가처분과 이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옹진군이 해사채취중지 및 허가취소에 대한 사례로 태안군이 주장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권한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그림 2. 1978년 1:50,000 지형도(당진-평택)



그림 3. 1990년대 이후 1:50,000 지형도(당진-평택)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9조 및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위 국내 법·제도 및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이 바다에도 존재함을 확인였다. 그러나 현재 공유수면 또는 바다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간 관할구역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가 부재로 인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의 매립, 해저광물채취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분쟁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 시 분쟁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상경계획정 기준 및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국외 해상경계 관련현황

3.1 국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사례

3.1.1 미국

미국에서는 19년 이상 관측한 조석자료에 의거한 평균최저저조선(MLLW : Mean Lower Low Water)을 미국 해상경계의 기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상경계는 다음과 같이 주(States)의 해상경계, 세입경계,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보호해역, 임대해역, 대륙붕 등이 있다. 주의 해상경계는 일반적으로 기선으로부터 3마일까지(몇몇 주에서는 9마일까지 연장)를 주의 해상경계로 하며, 연방/주, 주간, 천연자원 등의 해상경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저토지법에 따라 대법원에 의해 경계가 설정될 수 있으며, 세입경계(Revenue Sharing)는 주의 해상경계로부터 3마일까지 연장된다.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마일까지 연장되고, 접속수역은 기선에서 12마일(영해)부터 시작하여 24마일까지 연장된다(1999. 9. 2 대통령 행정명령).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경계로부터 기선에서 200마일까지 연장, 보호해역(Sanctuary)은 국가차원의 보호해역은 연방 및 주의 관할해역을 넘어선 해저자원까지 연장, 임대해역(Lease Blocks)은 채광임대의 목적으로 미국 관할해역 내에 있는 대륙붕을 세부적으로 구획한 해역이며, 미국에서 아직 가입하고 않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의거한 대륙붕이 있다.

특히, 주의 관할 해역에 대하여는 미국 관련법에 따라 토지의 사유권(Upland private ownership)이 일반적으로 평균고조선(MHW : Mean High Water)까지 연장되고, 이 지역의 해저 및 해양자원을 관리한다. 주정부의 관할 해역 내에서 주는 관리, 집행, 대여 및 개발할 권한을 지니고 해양의 천연자원을 사용하며, 연방정부는 무역, 항해, 방위, 어업 및 국제업무에 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해상경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해저토지법(Submerged Lands Act)에 근거하고 있으며,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긋는 해안선의 기준은 조수간만의 기준선(Tidal Datums)을 기초로 미국의 연방과 주의 해상경계 시점은 평균최저저조선(MLLW)이다. 이를 기준으로 바다 쪽으로 3해리(또는 9해리)까지가 주의 관할수역이고, 12해리를 미국 영해로, 주관할 공유수면의 경계를 짓는 해안선은 주들마다 다른 조수간만의 기준선을 적용하고 있다. 소유권 측면에서 조수간만 기준선은 개인이 소유하는 육지의 토지와 주가 소유하는 해저의 토지가 구분되며, 이러한 기준 가운데 텍사스주를 포함한 3개 주는 Mean Higher High Water(MHWW)를 해안선의 기준으로 삼고, 뉴욕주를 포함한 15개 주는 Mean High Water(MHW)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나머지 델라웨어주를 포함한 6개 주는 MLLW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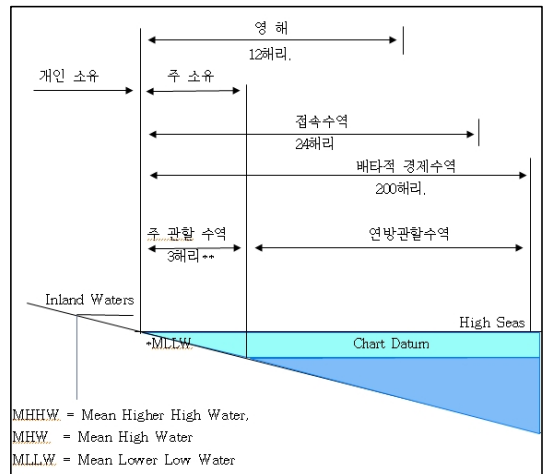


그림 4. 미국의 해상경계 기준

3.1.2 호주

호주의 해상경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 기준선(TSB: Territorial Sea Baseline)으로부터 해

양구역을 정의하였으며, 호주연방정부의 해상경계는 영해 12해리, 접속수역은 12해리부터 24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2해리부터 200해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Coastal Waters(State Powers) Act 1980 (1980년, 연안해수법)」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3해리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의 주정부간 해상경계의 기준은 해상관할에 대한 근거법인 「1980년 (주권한) 연안해수법(Coastal Waters (State Powers) Act 1980)」의 전문에서 이 법이 모든 주의회의 요청에 따라 연방정부의 회에서 제정되게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의 인접지역은 「1967년 해저석유법」에 명시된 것을 포함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3조). 주정부간 해상경계는 이미 「Petroleum(Submerged Lands) Act 1967(1967년 해저석유법)」의 “접속지역경계”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위도와 경도상의 위치로써 정의되었으며, 해상의 “접속지역경계”의 구획기준은 인접한 주 또는 지역간 등거리중간선을 취하고 있다.[2, 8]

3.1.3 일본

일본에는 바다에 연접하고 있는 현이 39개이며, 해상경계에 관해서 어떤 법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방자치법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시정촌간의 경계를 먼저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에 어업분쟁, 신규토지의 소속문제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 해상에 경계선이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획선하여 고시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에서 해상경계에 관한 분쟁의 초점은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1960년 대 이후 지방자치법의 보완과 관례 등을 통하여 정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제원칙들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적 경계인 하천, 해변 등도 그 위에 엄밀한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생길 때에는 복수의 경계획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는 모든 영해에 처음부터 선을 그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분쟁의 우려가 있는 등 영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구역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개별 사안

마다 선을 그어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획정의 고려사항, 획정 기본방침 및 기준과 요소를 마련하고 있다.[8]

표 1. 일본의 해상경계분쟁시 경계획정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일반적 기준	획정의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행정권 행사인정 • 지도, 기록 등 인지된 연혁 • 경계가 명확히 식별되는 지리상의 자연조건 • 주민의 사회,경제상의 편의
	획정의 기본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평·합리·객관적인 사고 • 자치분쟁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 • 분쟁당사자간 양보의견 수렴 • 급후의 이용계획 고려
	경계획정의 기준 및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거리선, 육상경계연장선, 수상경계연장선, 수선(垂線), 수로선, 중점연결선, 수계(水際)평행선, 등면적, 동일용도동일자치체, 동일기업동일자치체, 도로, 운하

3.1.4 중국

중국은 1996년 지방정부간 육상경계 설정 이후 1997년부터 해상경계 설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홍콩의 중국 귀속으로 인하여 인접한 광둥성과의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상경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은 섬의 소속, 수산양식, 소금, 세금징수 등의 이유로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해양국의 주관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영해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권과 개발권을 소유하는 위탁관리의 체계이다. 해상경계획정을 위하여 해안선의 특성상 육상경계 연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직선으로 표현 및 면적형평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해상경계는 좌표로 확정하고 있으며, 유인도의 경우 최대 3해리까지 적용하나 도서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좁게 적용하고, 무인도는 관할수역을 갖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2 국제간 해상경계 분쟁 현황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분쟁의 해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국가간 해상경계 분쟁사례를 통하여 해상경계 획정 방법에 대하여

표 2. 국외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설정기준과 범위[8]

국가	근거법	기준 (원칙)	기점	범위	비고
미국	해저토지법 (SLA)	주와 연방경계는 3마일(일부는 9마일)	저조선	3마일 (일부 9마일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해양 대기청 (NOAA), •연방지리태 이타위원회 (FGDC), •해상경계실 무단 (MBWG) 등에서 관할
		주간 경계는 해양법협약에 준거함	주간 경계	3마일 (일부 9마일 까지)	
			평균 최저저조선 (MLLW) 기준		
호주	Petroleum (Submerged Lands) Act, 1967	등거리 중간선	저조선	3해리 까지 (주정부)	산업관광자원 부에서 관할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도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공유수면매 립시 사전 행정구역을 결정토록 	등거리선원 칙 등 여러 가지의 일반원칙 적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는 지방 자치단체의 구역 •필요한 경우는 획선
중국	법제 준비중	주로 육상경계연 장주의 적용	-	-	국무원 국가해양국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분쟁사례로 1982년에 서명 1983년에 발효된 영국과 프랑스간의 대륙붕 분쟁사건으로 몇몇 제한된 대표 기점(중부해협, 서부해협), 수정된 등거리선(남서부해역) 그리고 거리(채널제도)에 기초한 단순화된 등거리선을 이용하여 경계를 확정하였다.

두 번째로 1989년 파푸아뉴기니의 부겐빌 섬과 솔로몬 군도의 인근 해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이 없어 양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하는 단일의 해양경계선을 결정한 협정사례로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된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 등거리방식이 적용되었다.

세 번째로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 분쟁 사례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후 중남미와 카리브지역에서 체결된 최초의 해양경계협정이 다. 콜롬비아와 온두라스 간의 협정은 이 지역의 다

른 협정과는 달리 그들 상호 관계를 규율하는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간의 해양경계선을 확립할 필요성을 언급한 간단한 서문을 제외하고는 해양법 내용이나 경제개발에 있어 해양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선언적 원칙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분쟁의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되고 새로운 판결이 등장하는 시기에 카리브해에서 해양경계획정 작업이 느리게 진행되던 시기에 등장하였다. 이 지역 경계획정의 기원은 1970년대 후반에 체결된 일련의 협정과 관련되는데, 광물자원과 어업이라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구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협정은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간의 잠재적인 도서영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다. 경계획정 해역은 온두라스 대륙영토 동쪽에 위치하는 데, 이 지역에서 콜롬비아는 Intendencia of San Andres and Providencia 군도를 형성하는 많은 Cay와 Bank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Bajo Nuevo와 Serranilla Bank에서는 양 국가에 잠재적인 영토분쟁이 존재하였다. 경계획정에 사용된 방법은 동쪽으로 향한 두 개의 위도선과 이를 연결하는 경도선으로 구성되는데, 북쪽을 향한 자오선은 Serranilla에 있는 Cay로부터 측정된 호에 의해 굴곡이 져 있다. 위도선의 굴곡점은 섬과 본토를 기준점으로 한 두 개의 등거리선에 의해 결정되었다.

양국간의 경계획정 수역에는 당사국간에 도서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존재하였지만 경계획정협정을 통해 일단 해결하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계획정 수역에 제3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서도 존재하고 있지만, 일단 이를 무시하고 경계획정을 한 것은 도서와 관련한 분쟁이 존재하는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해양경계획정과 더불어 경계선 주위에 공동의 단일 석유나 가스전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활용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의 배분은 경계선의 자국측에 존재하는 자원의 매장량 비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와 스웨덴간 발틱해에서 양국간 대륙붕 및 어업구역에 대한 경계획정에 대한 사례로 수정된 등거리선과 타협을 통하여 해상경계를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폴란드와 스웨덴 간의 대륙붕 및 어업수역협정은 단일의 해양경계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이 협정의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일부가

일반적인 발틱해의 관행에 따라 대항국간에 단순화한 등거리선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계선 중 두 번째 구간의 설정은 대략 1년 정도 앞선 스웨덴과 소련 간 협정(Sweden-USSR(1988), No. 10-9 참조) 선례로서 작용했으며 분쟁해역은 동일한 원칙에 따라 폴란드가 25%, 스웨덴이 75%로 분할되었다.

3.3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원칙 및 기준

본 장에서는 상기에서 검토된 사항을 기반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획정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 원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1항 및 제83조 1항은 해양경계 획정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으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원칙이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 원칙이다.

형평의 원칙은 해상경계획정에 있어 지형 등의 지리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가 고려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요소 중 국가의 행위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당사국들의 행위는 관행상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사실상 또는 잠정적 선이 경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이다. 또한 비례성의 합리적 정도는 관련 연안국에 속하는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와 이들 개별국가 해안의 길이에 따른 비례성에 기초한 기준 등으로 경계획정에 있어서 여러 형평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등거리 원칙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근거하여 마주보고 있거나 또는 인접하고 있는 해안을 갖는 국가간에 있어서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

역의 경계획정원칙의 하나로 경계를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중간선에 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대륙붕의 경우 1958년의 대륙붕에 관한 협약은 해당 여러 나라간의 합의가 없을 때 등거리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에 있어서 위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 원칙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3.4 국외 해상경계 현황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외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및 국제간 해상경계분쟁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는 국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원인은 자원개발권, 어업권, 세수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분쟁 원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외 해상경계 분쟁의 해결방법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미국, 호주, 일본, 중국은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준 및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방법과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며, 해상경계 획정 방법 및 기준 신설시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준과 원칙이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에 있어서도 국제간 해상경계 획정과 같이 지리적 요소, 경제적 요소 등의 다각적인 시각에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국제간 해상경계 분쟁사례

분쟁사례	지리적	기선환경	경계획정 방식
영국-프랑스 (1982년 서명, 1983년 발효)	채널, 실리제도에 대한 교섭	통상기선 사용	등거리선
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1989년 체결)	배제	파푸아뉴기니 : 단일선 솔로몬제도 : 다섯 개의 군도 기선 적용	등거리선
콜롬비아-온두라스 (1982년 체결)	도서의 위치 적용	직선기선 배제	등거리선+특수사정
폴란드-스웨덴 (1989년 서명)	도서의 위치 적용	직선거리의 효과 미흡	등거리선

4.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 방법 및 기준

4.1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하여 조사·분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국립해양조사원 실무자들 및 학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응답해준 전문가들 대다수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바다로부터 얻는 어업, 광물, 에너지, 해양관광 등 다양한 자원 획득과 매립지를 둘러싼 세수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해상경계의 설정과 그 분쟁에 따른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분쟁의 첫 번째 원인으로 해상경계 획정에 대한 법·제도의 부재를 주장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해상경계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발생시 법원에서는 수산업법, 광업법 등 관련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법에서도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해상경계 획정에 대한 명확한 법·제도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두 번째로는 분쟁발생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1970년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현재 및 미래의 변화된 해양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상경계를 대축척 해도를 기준으로 좌표로 표시함으로써 해상경계의 명확성을 확보하자는 견해를 보였다. 세 번째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상경계의 획정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위원회의 설치와 이를 통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와 같이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3.2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획정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였다.

4.2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절차

4.2.1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기준

본 장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와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해상경계측량의 작

업방법 및 기준을 통일하여 측량결과의 정확도 향상과 분재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과 합리적인 해상경계 획정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자원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해상경계 획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해상경계 획정에서 적용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의함은 물론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경계획정 방법 및 업무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에 따라서 해상경계 획정 기준에 대한 핵심적인 용어를 정의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해상경계 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업무규정(2010.5.14)』에서 정의한 해상경계, 등거리선, 중간선의 용어 외에 저조선, 간조 노출지, 해안선, 섬, 간출암, 노출암, 해리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표 4. 해상경계획정 관련 용어정의

용어	정의
1. 해상경계	관련 대상자간의 관할수역 외측한계
2. 등거리선	서로 인접하는 양방 간 경계기준점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
3. 중간선	서로 대항하는 양방 간 경계기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
4. 저조선	해수면이 약최저저조선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의 경계선
5. 간조 노출지	간조 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 물에 잠기는 썰, 모래 등으로 육지 해안선과 분리된 독립적인 지역
6. 해안선	해수면이 약최고고조선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의 경계선
7. 섬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해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
8. 간출암	간조 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인 바위로 구성된 지역
9. 노출암	만조 시에도 노출되는 자연적인 바위로 형성된 암석
10. 해리	해상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를 말하며, 1해리는 1,852미터 임

두 번째로는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상경계측량의 정확도 확보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측량방법의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① 법령 또는 판례에 따라 상호 합의 또는 결정된 해상경계선이 있을 경우 그 경계선에 따른다.
- ②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경위도 좌표로 해상경계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육상기점으로부터의 방향과 거리가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경위도 좌표로 산출한다.
- ④ 정해진 해상경계가 없을 경우 사용면적 등 사실관계에 따른 현황을 측량하여 해상경계를 획정한다.
- ⑤ 해상경계가 상호 중첩하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양 기점으로부터 등거리 또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한다.
- ⑥ 해상경계는 대축척(1:50,000 이상) 해도 상 해안선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등거리 또는 중간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 ⑦ 등거리점 또는 중간점이 너무 많아 복잡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변환점을 선정하여 등거리 또는 중간선을 단순화 할 수 있다.
- ⑧ 육지와 연속교로 연결된 섬은 육지로 보지 아니한다.
- ⑨ 노출암, 간출암, 암암, 세암, 간조노출지 등은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⑩ 영구적인 항만시설(선착장, 잔교, 방파제 등)은 바다 쪽 최 외곽선을 기준으로 한다.

세 번째로는 해상경계 획정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섬을 국가 또는 지방 관할관청에 유인도로 등록된 섬, 국가 또는 지방관할관청에 등록된 무인도 중 단경이 100m이상의 섬, 기타 당사자간 이용하기로 합의한 섬으로 정의하여 도서지역에 대한 해상경계 획정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관련된 분쟁의 해소를 유도하였다.

네 번째로는 등거리선 획선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그림 5와 같이 해안선의 바다 방향 최외곽에 위치한 점을 기준으로 하며, 등거리선의 획선은 양측 해안선의 바다 방향 외곽 3점으로부터 등거리인 점을 찾아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3해리까지 결정하나, 3점 모두 동일 해안선에 위치하지 않고 양측에 균일하게 분포해야한다.

또한, 등거리선의 분할은 그림 3과 같이 양측해안의 최외곽 기준점 중에서 a와b 같이 적당한 간격을 가진 2점을 선택하여 등거리점 t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직인등분선인 op를 결정한다. 해안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a, b, c 세 점이 동일한 거리가

되는 u 점을 결정하고 c와 b에 대한 수직이등분선을 그리고 다시 해안 방향으로 b, c, d가 동일한 거리가 되는 v점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안선 경계점까지 반복하여 등거리 선을 획선한다.

중간선의 획정기준은 해안선의 바다 방향 최외곽에 위치한 점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중간선은 서로 같은 거리에 있는 중간점들을 연결하여 획선한다.

중간선의 분할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 영해의 경계획정):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대항하여 있는 경우 양국의 영해기선에서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으로 경계를 획정한다.”라는 규정을 기초로 하여 그림 4와 같이 임의의 시작점 a, b는 a점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가까운 점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a, b 점을 결정하면 수직이등분선 op와 교차점 m을 결정하고 p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a, b, c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거리가 되는 q점을 결정한다. b와 c점을 기준으로 o'p' 수직선을 그리고 p'를 진행시키면서 b, c, d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r점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수행하며, 세 점간의 거리가 동일한 점을 3등분점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로 등거리 및 중간선 부근에 존재하는 무인도서와 노출암 실태에 따라서 해상경계를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과 동떨어진 경우의 해상경계 획정 기준과 등거리선 및 중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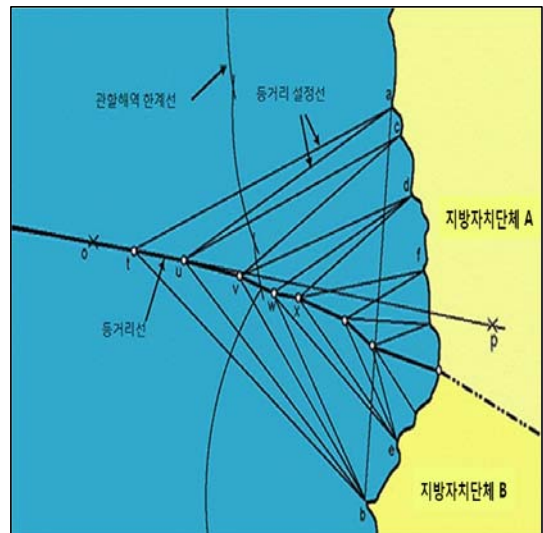


그림 5. 등거리선의 분할 방법

의 수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유인도 또는 무인도가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해상경계는 관련 법령 또는 국제 관례를 기초로 확정하며, 등거리선 및 중간선의 수정은 그림 6과 같이 규정하였다.

- ① 당사자 간 합의할 경우 등거리선 및 중간선은 무인도와 노출암에 따라 구분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무인도는 단경이 100m 미만, 노출암은 해도상 노출암으로 표기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 ② ①의 중간선 및 등거리선 부근에 존재하는 무인도, 노출암 등의 영향으로 경계획정을 수정하는 기준은 3 가지로 구분되며, 동물 또는 식물이 자생하는 무인도는 섬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양방 간 최단거리의 1/10 이내에서 최대 500m 까지 경계선을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노출암은 해안선(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양방 간 최단거리의 1/20 이내에서 최대 250m까지 경계선을 확장할 수 있으며, 간출암, 암암, 세암 등은 경계획정 수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항로표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 노출암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2개 이상의 해상경계가 인접하거나 대항하는 경의 확정 방법은 어느 일방(A)과 나머지(B, C)를 모두 합한 경계기준으로 중간선 또는 등거리 선을 표시하고, 나머지 중 어느 일방(B)과 나머지(A, C)를 모두 합한 경계기준으로 중간선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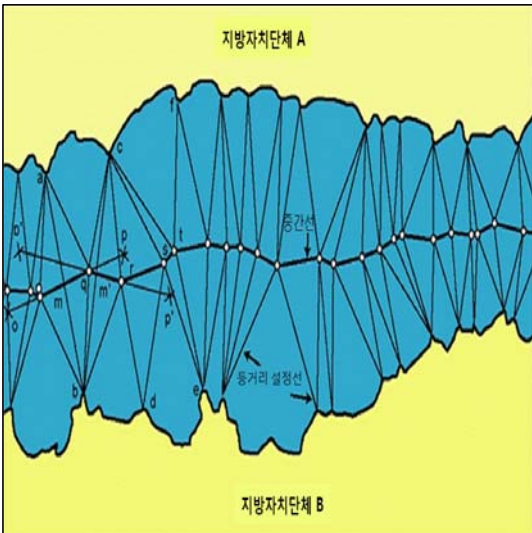


그림 6. 중간선의 분할 방법

등거리 선을 결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차례로 어느 일방을 순차적으로 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합하여 중간선과 등거리 선을 결정한다.

여섯 번째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거리 및 중간선을 분할 할 경우에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이용 시 중간선원칙이나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해도 해상경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정으로 국제적으로 인증되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등거리선의 변곡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변곡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안선의 길이, 산업시설의 밀집도, 거주인구 등의 비례성을 반영하여 두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를 결정한다.

4.2.2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분쟁조정 절차

해상경계 분쟁 조정 방법은 해상경계의 확인 및 확정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분쟁발생 시 관할수역의 경계를 확인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해상경계 측량 및 확정 결과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 가지 조정사항을 제시하였다.

-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해상경계 확인 및 확정에 대하여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방이나 안보 관련 경계는 다루지 아니한다.
- ② 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1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위 3가지 사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해상경계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할 것이며, 해상경계조정위

원회는 시·도간의 분쟁,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의 분쟁,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하고,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상경계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자격은 기 도입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건축분쟁위원회와 같이 관련분야 관·산·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야한다. 그 내용은 표와 같다.

표 5. 분쟁조정위원회 비교

구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목적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 등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임명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지방조정위원회는 시·도지사)이 임명 또는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또는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해상경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다, 그 밖에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다.

해상경계조정위원회는 해상경계 관련 법령 내용의 해석, 관습, 관행, 합의 및 판례 등의 해석 및 제도상 표시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 해상경계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해상경계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재상정하고 재 심의하여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상경계조정위원회가 경계획정 또는 분쟁의 조정을 의결 또는 기각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고, 신청인과 피 신청인을 기속해야할 것이다.

5. 결론

현재 해양의 이용가치 상승과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해상경계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으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증가하고, 이

리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분쟁원인 및 유형을 조사·분석하고 국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간 해상경계 획정 원칙과 방법을 기초로 해상경계측량의 작업방법 및 기준을 통일하여 측량결과와 정확도 향상과 분쟁해소를 위한 근거 마련과 합리적인 해상경계 획정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자원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해상경계 획정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해상경계확인·획정 및 측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과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10개 항목의 일반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등거리선, 중간선 획선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여 해상경계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경계 분쟁조정 절차를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합법적 해결방안으로 해상경계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조정결과와 효력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상경계분쟁의 사전예방 및 합법적 해결이 가능한 기준과 원칙이 해상경계 관련 업무의 수행 및 고시된 결과에 있어 대국민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의 합리적 사용과 국민생활 편의증진, 분쟁의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상경계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연구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성호, 2003,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설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 [2] 김성은, 200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해상경계 분쟁에 관한 연구”
- [3] 김백수 외 3명, “한반도 주변의 영해기점 및 기선에 관한연구_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GIS학회, 2008
- [4] 김현수, 2010, “해상경계측량 규정(안)연구”,국립해양조사원 보고서”
- [5] 계기석, 2006,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분쟁의 원인과 해소방안”, 국토연구제51권, pp. 57-70..
- [6] 임재형, 2009, “지방자치단체간 공공분쟁의 발생원인 :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35 No3 2009, pp105-128.”

- [7] 장학봉, 조승환, 김진섭, 최윤수, 2004, “해상경계 설정방안 연구”, 2004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27-31.
- [8] 장학봉, 2003. “해상경계설정방안 연구”, 국토해양부최종보고서
- [9] 정남균, 2002,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구역경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충청남도근역 아산만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10] 최윤수 외 3명, “영해기준점의 효율적 유지관리”, 한국공간정보학회지, 제18권, 제1호
- [11] 법제처 www.moleg.go.kr
- [12]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 [13]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14] 한국석유공사 www.knoc.co.kr
- [15] 국토해양부 www.mltm.go.kr
- [16] 국립해양조사원 www.khoa.go.kr
- [17]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논문접수 : 2012.02.08

수정일 : 2012.0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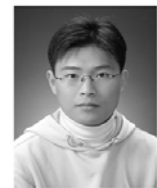
심사완료 : 2012.04.24



최 윤 수

1992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1994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2008년~현재 한국공간정보학회 부회장
2001년~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정교수

관심분야는 측지 및 측량, 지적, 해양관련 정책



김 재 명

2006년 충남대학교 토목공학 공학사
2008년 충남대학교 대학원 지형정보공학 및 건설관리학 공학석사
2010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공간정보공학 공학박사

관심분야는 3차원 공간정보, 지적, 해양관련 정책



김 현 수

1993년 University of Wales 박사
2008년~2009년 독도연구소 소장
2009년~현재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
2010년~현재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2001년~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부교수

관심분야는 국제 해양법



박 병 문

1993년 숭실대학교 전산학과 공학사
2000년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리정보공
학 공학석사
2010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공간정
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는 해양관련 정책 및 측량기술